

# 중앙선거관리위원회(법제국)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중앙선거관리위원회(법제국)에서 기간제 근로자(행정사무보조직)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,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년 1월 31일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

## 1. 채용개요

채용분야 (기간제)	선발예정 인원	계약기간	근무부서 (근무지)	비고 (담당업무)
행정사무보조직	1	25. 3. 4. ~ 25. 5. 30.	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(국회)	행정사무보조 - 전화연결, 행정업무 보조 등

- ※ 선발예정인원 및 계약체결일은 예정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- ※ 근무 적격성, 계속 근무 가능성 등 적합 여부 판단 후 연장계약 가능
- ※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 종료
- ※ 구체적 근무조건은 "5.근무조건 등" 참고

## 2.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

가. 지원자격 ※ 성별, 연령, 학력 무관

- 최종면접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
-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
-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민원인 등에게 친절히 응대할 수 있는 사람
- 다음 '채용결격사유'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### < 채용결격사유 >

-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  1. 피성년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

-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## 나. 우대사항

### [공 통]
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시행규칙 [별표2] ‘사무’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및 ‘정보기술’ 분야의 정보처리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 자격증 소지자
- 그 밖에 행정업무 등 관련 분야 경험자, 근거리 거주자
- 법학 계열 전공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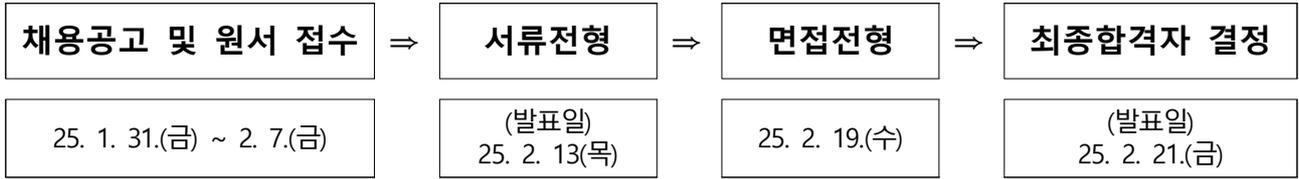
※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## 다. 가점사항 [원서접수 마감일('25. 2. 7.) 기준]

사회 형평 가점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	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%
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
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
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	
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

※ 가점은 중복 적용이 불가함(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).

### 3. 채용 절차



#### 가. 서류전형 방법

채용(응시) 분야	서류전형(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정도)					
기간제	계	평가점수				가점
		행정업무 경력	우대사항 (자격증 등)	계속근무 가능성	자기소개서 등 지원분야 적합성	
	100점 + 가점	25	15	20	40	3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</li> <li>- 서류전형 합격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</li> <li>-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(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)</li> <li>- 서류전형 결과(면접전형 대상자) 발표 : 25. 2. 13.(목)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대상 개인별 통지</li> </ul>					

#### 나. 면접전형 방법

채용(응시) 분야	내용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정요소를 상(10점), 중상(8점), 중(6점), 중하(4점), 하(2점)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정요소 : 1. 근로자로서 정신자세, 2.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3.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4. 예의 품행 및 성실성, 5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</li> </ul> </li> <li>○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불합격 기준 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했을 때</li> </ul> </li> <li>○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&gt;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채용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하여 결정</li> </ul> </li> </ul>

#### 다.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

채용분야 (기간제)	근무부서 (근무지)	최종 합격자	예비합격자 (운영기한)	비고
	"1. 채용개요"에 따름		2명 (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)	

※ 채용권자는 최종합격 예정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가능

-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
-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(단,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)

#### 4.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

##### 가. 원서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1. 31.(금) ~ 2. 13.(금) 18:00
- 접수방법
  - 등기우편 접수 :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법제과 (우편번호 : 13809)
  - 전자우편(이메일) 접수 : [99bono@nec.go.kr](mailto:99bono@nec.go.kr)
- \* 접수기간 마감일 18:00까지 메일도착분(등기우편 포함)에 한하여 유효함.

##### 나. 제출서류

제출시기	제출서류	
원서접수 시	-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※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	
	제출대상	제출서류
	가점 대상자	①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</li> <li>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</li> <li>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</li> <li>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</li> <li>- 다문화가족 :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</li> <li>· 가족관계증명서</li> <li>·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</li> <li>·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 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</li> <li>·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이민자)</li> </ul> ② 자격가점 대상자 :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
자격증 소지자	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등 사본 제출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~ 면접전형 당일	제출대상	제출서류
	서류전형 합격자 전원	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 1부
최종합격자 발표 후	-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(채용예정자),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, 부패방지권의 위법상 취업제한관련 체크리스트 ※ 구체적인 채용예정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	

※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

※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(자격·우대사항 증빙서류 등)는 면접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.

## 5. 근무조건 등

응시분야 및 근무부서	계약기간 및 근무시간	보수	주요업무 (우대사항)
[행정정보조직] 법제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간 : '25. 3. 4. ~ '25. 5. 30. (3개월 정도)</li> <li>기본근무 : 09:00~18:00 (1일 8시간, 휴게시간 : 12:00 ~ 13:00)</li> <li>※ 필요시 사전협의 후 시간외근무 가능</li> <li>※ 근무 적격성, 계속 근무 가능성 등 적합 여부 판단 후 연장계약 가능</li> </ul>	<p>출무 1일당 86,010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식비 포함</li> <li>※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주차·월차 수당 지급 및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시 임금 가산지급</li> <li>※ 소득세 공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정치관계법규 등 및 선거 관련 민원 전화안내</li> <li>·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소관업무 사무보조</li> <li>· (우대사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행정업무 유경험자,</li> <li>-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법학 계열 전공자</li> <li>-근거리 근무자</li> </ul> </li> </ul>

※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름.

## 6. 유의사항

### □ 채용서류 반환 관련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“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”(붙임4) 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.
-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.
-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
  - ※ 단,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

## □ 채용비리 관련
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(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)를 제출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33조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

## □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부모직업, 가족 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)
- 응시원서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.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회에 일절 제공되지 않음.
-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공됨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.
- 응시원서는 **접수 마감기한 [’25. 2. 7.(금) 18시]** 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-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\* 지참(미지참 시 응시 불가)  
\* 기간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(사진포함, 유효기간 내)
-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-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법제과 채용담당자(02-3294-8408)에게 문의

- 붙임 1. 응시원서 1부.  
2. 자기소개서 1부.  
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  
4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(해당 시). 끝.

2025년 1월

중앙선거관리위원회(법제과)